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8.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진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임실 거주민들에 한하여 완화된 심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실군에 5년이상 실거주한 주민에 한하여 발전용량 200kw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별표1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임실군 계획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심사예고 : 5 일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 신청일까지 임실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자에 한한다)이 발전용량 200kw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5]</p> <p>2. 가. ~ 차.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신 설></p>	<p>2. 가. ~ 차. (현행과 같음)</p> <p><u>카. 주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 신청일 까지 임실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고, 실거주자에 한한다)이 발전용량200kw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정한다.</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원